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11월 22일  
도시·교통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3년 11월 6일
- 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0일
- 라. 상정일자: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 
도시·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3.11.22.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주차관리과장 박승국)

### □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(2023년 12월 31일) 도래로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,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에 따라 세입 관련 조항을 정비 하여 주차장 관리·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# □ 주요내용

#### 가. 세입 관련 조항 정비(안 제3조)

- (정비) 「도로교통법」 제160조 → 「도로교통법」 제161조제1항제3호
- (정비) 「주차장법」 제30조에 따른 부과하는 → 「주차장법」 제30조에 따른

나.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8조)

- 2023년 12월 31일 → 2028년 12월 31일

**3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,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제2항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3. 9. 1.~9. 21.) 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(기획예산과): 해당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(가족정책과): 해당 없음

**4. 전문위원 검토의견**

(전문위원: 배금택)

가. 개정 취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강서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회계의 존속기한 명시(안 제8조)
  - 2023년 12월 31일 → 2028년 12월 31일
-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 등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3조 제6호·제9호)
- 시행일에 관한 경과 조치 규정(안 부칙)
  -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

## 다. 종합의견

-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 업무 운영 관련 수입(주차요금수입,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)의 안정적인 조성을 통한, 주차장 설치 및 단속 등 주차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의 연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,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<sup>1)</sup> 따른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절차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- 본래의 설립 목적대로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 국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수립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6. 토론요지: 생략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관계 법령 1부.

---

1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회계의 구분)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※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알림(2023.8.30.심의, 기획예산과-9962): 원안가결

**□ 주차장법**

제21조의2(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.

**□ 지방재정법**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